

2016 대형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추진실태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단위 : 건, 천 원)

구분	제 목
	9 건
1	건설공사 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부적정
2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소홀
3	○○리(○○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4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5	○○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6	○○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부적정
7	○○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공사 사업추진 부적정
8	○○읍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사업추진 부적정
9	○○○ 야생화분재 생태원 조성사업 사업추진 부적정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횡성군 ○○○○실

【시행연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건설공사 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횡성군(○○○○실)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8,500백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 청사를 신축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을 건립하고자 ‘△△읍 △△리 △△△-△번지 일원’에 ‘○○○○ 청사 및 ○○○○○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않는 등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청사 및 ○○○○○ 건립공사
- 위치: 횡성군 △△읍 △△리 △△△-△번지 일원(3,477㎡)
- 사업량: 연면적 2,253㎡(지상1층/지상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공사기간: 2016. 6. 3. ~ 2017. 6. 7.(예정)
- 사업비: 8,500백만 원(국비 2,500, 도비 150, 군비 5,850)

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① 품질시험계획 승인 절차 미이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 등에 따르면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청은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시험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승인하고, 건설업자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횡성군(○○○○실)에서는 ‘○○○○○ 청사 및 ○○○○○ 건립공사’를 (주)○○○○ 대표 ○○○(○○군 소재)과 2016. 6. 3.부터 2017. 6. 7.까지 공사금액 2,720백만 원으로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착공 전에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하는데도 건설업자에게 품질시험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별도 보완하지 않은 채 2016. 6. 10. 착공계를 제출받아 착공토록 하는 등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② 품질 시험시설 및 품질관리자 미배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등에 따르면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발주청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청은 건설업자가 시험실 및 시험·검사장비를 현장에 비치하고 품질관리자로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황성군(○○○○실)**에서는 공사현장에 건설업자가 품질 시험실 및 시험·검사장비도 구비하지 아니하고 착공일로부터 141일이 경과한 2016. 10. 28.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조치하지 않았고

품질관리자로 선임된 ○○○의 경우 당해 현장 공사기간 중인 2016. 7. 2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발주자 승낙 없이 △△시 △△면 소재 ‘노인복지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되어 총 95일 동안 현장을 이탈하여 근무하는데도 건설업자에게 품질관리자의 변경 요구 등 별다른 조치 없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③ 레미콘 품질시험 부적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현장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과정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시료 채취 위치를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경우(레미콘 포함) 슬럼프·공기량·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을 하고, 굳은 콘크리트의 경우는 압축강도 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청은 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에 대해 건설업자가 시험·검사장비를

비치하고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품질검사 대행 기술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황성군(○○○○실)**에서는 공사 착공 이후 2016. 10. 28. 감사일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주요 구조체에 콘크리트 748㎡가 타설되는 동안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량, 압축강도 시험을 레미콘 납품업체인 ○○군 소재 △△산업(주)에서 품질시험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조치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적정

① 안전관리계획 승인 절차 미이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등에 따르면 ‘항타 및 항받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청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청은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업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황성군(○○○○실)**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별도 보완하지 않고 2016. 6. 10. 착공계를 제출받아 착공토록 하는 등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②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공사기

간 동안 매일 공중별로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일정 시기가 도래하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건설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점검차수별로 점검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횡성군(○○○○실)**에서는 2016. 10. 28.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조치 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다. 위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 미이행

① 고발조치 미이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횡성군(○○○○실)**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주)○○건설 대표 ○○○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하는데도 2016. 10. 28.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② 과태료 미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발

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횡성군(○○○○실)**에서는 발주청의 승낙 없이 2016. 7. 26.부터 같은 해 10. 28. 감사일 현재까지 총 95일 동안 현장을 이탈한 품질관리자 ○○○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처 분 요 구】

- 품질시험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위반 건설업자와 건설기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황성군 ○○○○사업소

【시행년도】 2015년 ~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23,749천 원

【제목】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소홀

【위법·부당내용】

황성군(○○○○사업소)에서는 [표 1]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이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다.

【표 1】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약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계약일자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대표)	비고
황성○○, △△,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오수관로 14.49km	2,134	2015. 9.14.	'15. 9.16.~ '16.10.29.	㈜○○○개발 (○○○)	
우천◇◇, ◎◎,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54	2015. 6. 1.	'15. 6. 2.~ '15.11.28.	㈜○○○기술단 (○○○)	
우천◇◇, ◎◎,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오수관로 11.91km	2,668	2016.10. 7.	'16.10.13.~ '18. 4. 5.	○○건설㈜ (○○○)	

가. CCTV 검사 분리발주 미이행

하수관거정비공사시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부실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공사 CCTV검사 및 수밀검사 관련 요청” [환경부 하수67712-549(2003. 5. 22.)회로 하수관거의 신설 또는 개량공사 시 CCTV검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함에 따라 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하수관거 CCTV검사를 분리발주하거나 직접 검사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통보하였다.

그런데, 황성군(○○○○사업소)에서는 2015. 9. 14. (주)○○○개발(대표 ○○○)과 2,134백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6. 10. 29.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황성 ○○, △△,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관로 CCTV 검사비용 ○○지구 26,099천 원(제경비 포함), △△지구 21,791천 원(제경비 포함), □□지구 23,024천 원(제경비 포함)등 총 70,914천 원(제경비 포함)을 별도 발주하지 않고 도급공사비에 포함하여 통합 발주함으로써 시공자가 시행한 공사를 자신이 검사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나. 설계용역 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등에 따르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고, 감독자는 계약 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268호)

제25조(용역의 준공)에 따르면 용역감독자는 용역이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용역성과를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횡성군(○○○○사업소)**에서는 ‘우천 ◇◇, ◎◎,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2015. 6. 1. ㈜○○기술단(대표 ○○○)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5. 11. 28. 용역을 준공하였으나 차선도색 및 가설사무실 공종의 경우 설계도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아래와 같이 **총 23,749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이 과다 계상되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① 차선도색공사 관련기준 미적용

경찰청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면표시의 반사 및 조명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을 2012. 12월 개정·시행하였으며, 매뉴얼 제2장 제4절에 따르면 재귀반사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KS규격(KS M 6080)에서 2종, 4종, 5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매뉴얼 ‘노면표시의 재료 및 시공, 유지관리’ 편에 따르면, 수용성형은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중앙선, 길가장자리 구역선에 사용하고, 용착식은 차량에 의해 쉽게 마모되는 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횡성군(○○○○사업소)**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기계식 차선도색은 2종(수용성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1종(상온건조형)을 설계서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수동식 차선도색 구간은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방지역으로 2종(수용성형)을 적용하여야 했는데도 4종(용착식)을 설계서에 반영하여 **7,437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계상하였다.

[표 2] 차선도색 설계 부적정 현황

(단위: ㎡, 천 원)

차선종류	수량	당초(현재내역)<A>		변경(조정내역)		증감 <B-A>	비고
		시공법	사업비 (제경비포함)	시공법	사업비 (제경비포함)		
합계			41,219		33,782	감 7,437	
제경비			14,521		12,406	감 2,115	
백색실선	587	용착수동식	11,759	수용기계식	4,422	감 7,337	
황색실선	523	용착수동식	11,523	수용기계식	4,039	감 7,484	
백색파선	25	용착수동식	527	수용기계식	194	감 333	
백색실선	1,689	상온기계식	2,889	수용기계식	12,721	증 9,832	

② 가설사무실 과다설계

「건설표준품셈」 제2장 ‘가설공사’ 편에 따르면, 공사규모(직접노무비 9.8억 원)에 따라 가설사무실(감독·감리자현장사무소, 수급자현장사무소, 창고, 숙소)규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현장은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현장으로 현장상주 감독·감리자용 가설사무소가 불필요하므로 310㎡만 설계에 반영하여야 했는데도 410㎡를 반영하여 **16,312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계상하였다.

[표 3] 가설사무실 설계 부적정 현황

(단위: ㎡, 천 원)

공종	당초(현재내역)<A>		변경(조정내역)		증감<B-A>		비고
	면적	사업비 (제경비포함)	면적	사업비 (제경비포함)	면적	사업비 (제경비포함)	
가설사무실	410	62,026	310	45,714	감 100	감 16,312	

【처 분 요 구】

- 앞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시 CCTV검사는 분리 발주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시기 바람,
- 또한, 관련 기준과 상이하게 과다 계상된 공종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23,749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감액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황성군 ○○○○과

【시행년도】 2015년 ~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회수 136,400천 원(감액 45,300, 회수 91,100)

【제목】 ○○천(○○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황성군(○○○○과)에서는 2015. 4. 13. (주)○○건설(대표 ○○○)과 ‘○○천(○○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도금액 4,977백만 원으로 계약하여 2017. 4. 8. 준공을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적정하게 업무 처리하였다.

가. 공사감독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에 따르면, 공사 현장조건의 부합 여부와 공사 시행의 전반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등 예산절감 및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설계변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시행단계에서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황성군(○○○○과)에서는 ‘○○천(○○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교명주 설계부적정 및 거푸집 시공방법 변경으로 과다 계상된 공중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총 45,3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또한, 토공운반(순성토, 사토)에 대한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기성고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지급하여 91,1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하는 등 아래와 같이 공사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① 교명주 설계반영 부적정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구조물공” 수량산출요령에 따르면, 교명주는 장대교 및 특수교량과 같이 조형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 및 △△교”는 마을 진출입을 위한 소규모 시설로 교명주 시공이 불필요한데도 설계에 반영하여 17,650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

다 계상하였다.

② 거푸집 설계변경 미조치

교량공, 옹벽공, 보 및 어도공, 배수시설공 등 구조물시공을 위한 거푸집이 합판거푸집(3회) 10,024㎡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데도 유로폼으로 시공하여 27,650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2016. 10. 28.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 변경 조치하지 않았다.

③ 토공(순성토, 사토) 운반거리 미정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2조 및 제14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시행과정에서 외부적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 조정, 민원에 따른 노선변경, 공법변경 등의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49조에 따르면,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 안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횡성군(○○○○과)**에서는 축제공 시공을 위한 토취장 선정 관련 실정보고(운반거리 7.16km → 토취장 1: 4.79km, 토취장 2: 1.02km)를 2회 제출받고도 아무런 검토보고를 하지 않았고, 사토장은 운반거리가 변경(7.16km→4.38km) 되었는데도 실정보고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 10. 27. 감사일 현재 전체 공사대비 87%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설계변경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토공(순성토, 사토) 운반에 대한 거리가 감소하였는데도 감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시행하지 않아 2016. 6. 24. 제3회까지 기성금으로 91,100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기성금 과다지급 산출 내역

(단위: 천 원)

공종	단위	설계내역서			기성금 지급액 <C>	과다 지급액 [C-B]	비고
		수량	당초(현재내역) <A>	변경(조정내역) 			
계		106,184	978,600	726,600	817,700	91,100	
제경비	식		292,005	217,901	227,539	9,638	
순성토	㎡	51,404	686,595	508,699	590,161	81,462	
사토	㎡	54,780					

나. 축중기 설치 미이행

「도로법」 제77조,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및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제3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차량제한을 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10톤 이상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축중기는 덤프트럭이 토석을 적재하고 도로로 나갈 때 중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경사지나 굴곡지가 아닌 평탄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횡성군(○○○○과)**에서는 ‘○○천(○○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토공(순성토 51,404㎡, 사토 54,780㎡) 이동량이 106,184㎡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하여 덤프트럭이 토석을 적재하여 도로로 나갈 때 중량을 측정하여야 했는데도 2016. 10. 28.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현장에 축중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처 분 요 구】

- 관련 기준과 상이하게 과다계상 되거나 지급된 136,400천 원(제경비 포함, 감액 45,300천 원, 회수 91,100천 원)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액·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 사토·순성토 운반량이 10,000m³ 이상 발생하는 건설공사에는 축중기를 설치하여 과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양구군 ○○○○과

【시행연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양구군(○○○○과)에서는 아래 사업개요 및 [표 1] 과 같이 2016. 4. 27. 부터 3,880만 원의 사업비로 양구군 ○○읍 ○○리, △△면 △△리 일원에 ‘○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위 처 : 양구군 ○○읍 군량리, △△면 △△리 일원
 - 사 업 량 : 급경사지 도로사면(보수, 보강) L=2km
 - 사업기간 : 2016. 4. 27. ~ 2016. 11. 23.
 - 사 업 비 : 3,880백만 원(국비 1,940, 도비 388, 군비 582, 특별교부세 970)
- ※ 추진경과: [붙임] 참조

[표 1] 금악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계약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용역·공사명	용역·공사개요	계약금액 (변경금액)	계약기간 (계약일자)	수급자	
					업체명	대표자
실시 설계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 1식	74,047	'15. 9. 2. ~ '16. 1. 2. ('16. 9. 2.)	(주)○○기술단	○○○
공사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급경사지 도로사면 보수·보강 L=2km	2,713,150 (3,105,400)	'16. 4.27. ~ '16.11.23. ('16. 4.14.)	○○건설(주)	○○○

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에 따르면,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계약심사”란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하고, 추정금액 5억 원 이상 공사는 계약심사 대상이고, 계약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심사 등 계약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양구군 일상감사 운영규정」 제3조부터 제6조에 따르면,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의 업무 및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거쳐야 하며,

일상감사 대상사업은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이며, 계약금액 2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구군(○○○○과)에서 2016. 10. 24. 시행한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설계변경 건은 당초 계약금액이 2,713,150천 원에서 3,105,400천 원으로 계약금액이 14.5%(증 392,250천 원)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강원도 계약심사 및 양구군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양구군(○○○○과)에서는 본 공사의 설계변경 전에 강원도 계약심사 및 양구군 일상감사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명확성, 사업추진 주체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하여야 했으나 이러한 절차 이행 없이 설계 변경하였다.

나. 도로비탈면 사면녹화 과다 시공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원가계산 작성 시 부당하게 감액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2009. 6월, 구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로비탈면의 토질이 따라 식생기반재의 두께는 토사·건질토사·풍화토의 경우 1~2cm, 리핑암·풍화암의 경우 5cm 미만, 발파암의 경우 5~15cm로 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녹화공법을 검토하여 여건에 맞는 녹화공법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2016. 10. 24.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설계변경 전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탈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녹화공법 선정과 식생기반재의 두께를 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양구군(○○○○과)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이 7개 구간 3,533㎡의 비탈면 녹화공법을 녹생토로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비탈면의 토질 및 경사도에 따라 토사·풍화토의 경우 1~2cm, 리핑암·풍화암의 경우 5cm 미만, 발파암의 경우 5~15cm로 식생기반재의 두께를 적용하여야 했으나 7개 구간 중 4개 구간은 비탈면의 토질이 리핑암인데도 발파암 기준 최대두께인 15cm로 적용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46,430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시공하였다.

[표 2] 토질에 따른 식생기반재 두께 재산정 내역

(단위: ㎡, 천 원)

공종	당초(설계내역)<A>			변경(조정내역)			증감<B-A>	비고
	단가	수량	사업비 (제경비포함)	단가	수량	사업비 (제경비포함)	사업비 (제경비포함)	
계		3,533	268,740		3,533	222,310	(감) 46,430	
녹생토 (15cm)	49,595	3,533	268,740	49,595	2,196	162,580	(감)106,160	
녹생토 (5cm)				26,698	1,337	59,730	59,730	

[처 분 요 구]

○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는 계약심사, 일상감사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고, 도로 사면 등 녹화공법 시행 시에는 비탈면의 특성에 따라 녹화공법의 선정과 식생기반재의 두께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경과

- 2015.12.23. : 사전설계 검토(양구군→국민안전처)
- 2016. 1. 2. : 실시설계 준공
- 2016. 1.21. : 사전설계 검토 조치계획서 제출(양구군→국민안전처)
- 2016. 3.11. : 계약심사 결과통보(강원도→양구군)
- 2016. 3.17. : 일상감사 결과 통보
- 2016. 4.28. : 공사착공
- 2016.10.21. : 공기연장 결의
 - (당초)2016. 4.27.~2016.10.24.→(변경)2016. 4.27.~2016.11.23.
 - 사유 : 사업량 증가를 고려한 공기연장
- 2016.10.24. : 설계변경 시행결의
 - (당초) 2,713,150천 원 → (변경) 3,105,400천 원(증 392,250천 원)

【일련번호: 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양구군 ○○○○사업소

【시행연도】 2014년 ~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63,858천 원

【제목】 ○○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양구군(○○○○사업소)에서는 아래 사업개요 및 [표 1] 과 같이 2014. 4. 29.부터 2016. 10. 28. 감사일 현재까지 6,548백만 원의 사업비로 양구군 ○○읍 일원에 ‘○○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를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사업개요 >

- 사업명 : ○○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 위치 : 양구군 ○○읍 일원
 - 사업량 : 하수관로 8.79km, 맨홀 265개소, 펌프장 6개소 등
 - 사업기간 : 2014. 4. 29. ~ 2017. 10. 16.
 - 사업비 : 6,548백만 원(국비 4,584, 도비 1,178, 군비 786)
- ※ 추진경과: [붙임] 참조

【표 1】 양구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 계약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용역공시명	용역공시개요	계약금액 (변경금액)	계약기간 (계약일자)	수급자	
					업체명	대표자
실시 설계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1,348,299	2014. 4. 29. ~ 2015. 12. 23. (2015. 12. 23.)	주○○엔지니어링종합 건축사사무소 주 ○○○○○	○○○ ○○○
공사	○○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하수관로 8.79km 등	3,159,077	2016. 2. 25. ~ 2017. 10. 16. (2016. 2. 22.)	(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설계변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원가계산 작성 시 부당하게 감액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구군(○○○○사업소)에서는 2016. 2. 25.부터 양구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설사무소, 사토운반거리 등 과다 계상된 공중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통하여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2016. 10. 28.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총63,858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가. 설계와 상이하게 설치한 가설사무소 등 정산 미실시

「건설표준품셈」 제2장 “가설공사” 규정에 따라 본 사업장에는 공사규모(직접노무비 12억원)에 적절한 가설사무실 230㎡, 창고 80㎡, 숙소 100㎡가 반영되었으나, 2016. 10. 26. 감사기간 중 확인결과 가설사무실 165㎡, 창고 58㎡, 숙소는 72㎡로 설치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양구군(○○○○사업소)에서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여건변동 보고나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11,580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

나. 사토 운반거리 미정산

본 사업지구는 당초 설계시 사토장 확보되지 않아 5km 떨어진 임의지역에 사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따라서, 사업시행 시 사토지역이 확정된 물량에 대하여는 여건변동 보고 또는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6. 10. 26.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결과, 관로 등 매설 작업으로 인한 발생한 사토량은 평균거리 1.9km 떨어진 현장사무실 내 답(畓) 부지의 성토재로 활용되었는데도, 양구군(○○○○사업소)에서는 여건변동 보고 또는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20,720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

[표 3] 사토량 중복적용 및 운반거리 미 정산액

(단위: 천 원)

공사명	운반거리(km)		사업비 (제경비 포함)		증(△감)
	당초	조정	당초	조정	
사토	5	1.9	79,750	59,030	△20,720

다. 군부대(의무대) 폐쇄 계획에 따른 설계변경 미실시

본 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읍 ○○리 일원의 군부대(○○대)에서 발

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 공사에 관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2015. 8. 7. 육군 제○○○○부대에서는 “군부대 하수 연계처리 계획 현황 제출”이라는 공문을 통하여 ○○읍 ○○리 일원의 ○○대는 2019년 폐쇄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그런데 양구군(○○○○사업소)에서는 2016. 2월 본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읍 ○○리 일원의 ○○대 하수관로 신설라인은 제외하여야 했는데도 2016. 10. 28.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 여건변동 보고나 설계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31,558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예산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

【처 분 요 구】

- 설계와 상이하게 가설사무소 설치, 사토운반거리 미정산, 일부 하수관로 제외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63,858천 원 상당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경과

- 2014. 4.29.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양구군)
- 2014. 5.22.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요청(양구군→강원도)
- 2015. 5.29. : 지방도○○○호선(동수리) 도로점용허가(양구군→강원도)
- 2015. 6. 1. : 재원협의 요청(양구군→강원도)
- 2015. 8.27.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원주청→양구군)
- 2015. 9.21. : 재원협의 및 기술검토(강원도→양구군)
- 2015.10.15. : 인가신청회신(강원도→양구군)
- 2015.12.27.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6. 2.25. : 공사착공
- 2016. 8.17. : 제1회 설계변경
 - (당초) 4,924백만 원 → (변경) 4,869백만 원(감 55백만 원)

【일련번호: 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양구군 ○○○○과, △△△△과

【시행연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20,060천 원

【제목】 ○○지역 비점오염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양구군(○○○○과, △△△△과)에서는 아래 사업개요와 같이 2016. 2. 15. 부터 2016. 10. 28. 감사일 현재까지 205억 원의 사업비로 양구군 ○○면 일원 5개 지구에 ‘○○지역 비점오염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사업개요 〉

- 사업명 : ○○지역 비점오염정비사업
- 위치 : 양구군 ○○면 일원
- 사업량 : 침사지 2개소, 흙탕물 저감시설 47개소 등
- 사업기간 : 2014년 ~ 2019년
- 사업비 : 20,500백만 원(국비 14,350, 기금 4,305, 도비 922, 군비 923)
 - ※ 별첨 : 사업추진 경과[붙임 1] 및 계약현황[붙임 2] 각 1부.

가. 개발행위허가 미이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3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¹⁾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일지라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하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양구군(○○○○과)에서는 2016. 2. 15.부터 2016. 10. 28. 감사일 현재 까지 양구군 해안면 일원에 5개의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고

양구군(△△△△과)에서는 ○○○○과에서 2016. 1. 26. 본 공사의 1지구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보완조치 하여야 했으나 개발행위허가 없이 농지전용허가 협의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개발행위허가 없이 농지전용허가 협의하였다.

나. 목재휼스 관급자재 수량 과다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원가계산 작성 시 부당하게 감액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본 공사의 1지구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침사지 일원 목재휼스를 571경간(857m) 설치하면서 목재휼스는 제품을 경간당으로 제작되어 완성된 제품을 납품받는 것으로 이러한 제품에 재료의 할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급자재는 571경간을 구매하는 것으로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했다.

그런데 양구군(○○○○과)에서는 소요량의 10% 할증된 629경간을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20,060천 원의 예산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

【처 분 요 구】

- 목재휼스 자재를 과다 산정한 건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일지라도 관련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역 비점오염정비사업 추진경과

- 2014. 1. 2. : 비점오염저감사업 사업확정 통보(강원도→양구군)
- 2015. 5.~ : ○○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1지구 : 2015. 5.28. ~ 2015.12.18.
 - 2지구 : 2015. 8.20. ~ 2016. 3.28.
 - 3지구 : 2015. 8. 3. ~ 2016. 3.21.
 - 4지구 : 2015. 9. 3. ~ 2016. 2.26.
 - 5지구 : 2015.10.14. ~ 2016. 1.13.
- 2015. 9.18. : 1지구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 완료
- 2015.12.23. : 1지구 계약심사 완료(강원도)
- 2016. 1.26. : 1지구 농지전용허가 신청(○○○○과→△△△△과)
- 2016. 2.15. : 1지구 농지전용허가 협의(△△△△과→○○○○과)
- 2016. 2. ~ : ○○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 공사 착공
 - 1지구 : 2016. 2.15. ~ 2017. 2.14.
 - 2지구 : 2016. 6.15. ~ 2017. 6.14.
 - 3지구 : 2016. 6.15. ~ 2017. 6.14.
 - 4지구 : 2016. 6.15. ~ 2017. 6.14.
 - 5지구 : 2016. 6.15. ~ 2017. 6.14.
- 2016. 5.11. : 2, 3, 4, 5지구 계약심사 완료(강원도)
- 2016. 7. 5. : 2지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16. 7.11. : 2지구 농지전용허가 신청(○○○○과→△△△△과)
- 2016. 7.27. : 2지구 농지전용허가 협의(△△△△과→○○○○과)

○○지역 비점오염 정비사업 계약 현황

가. 실시설계 용역계약 현황

(단위: 천 원)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금액 (변경금액)	계약기간 (계약일자)	수급자		비고
				업체명	대표자	
○○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1지구) 실시설계용역	설계 1식	122,444	'15. 5.21~'15.12.18 ('15.5.20.)	㈜○○○○○	○○○	
○○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2지구) 실시설계용역	"	153,917	'15. 7.30.~'16. 3.28. ('15.7.29.)	○○○○○	○○○	
○○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3지구) 실시설계용역	"	48,325	'15. 8. 4.~'16. 3.21. ('15.8.3.)	○○○○○	○○○	
○○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4지구) 실시설계용역	"	47,679 (57,277)	'15. 9. 3~'16. 2.26. ('15'.9.1.)	㈜○○엔지니어링	○○○	
○○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5지구) 실시설계용역	"	47,887	'15.10.14~'16 .1.11. ('15.10.12.)	○○○○○	○○○	

나. 공사계약 현황

(단위: 천 원)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금액 (변경금액)	계약기간 (계약일자)	수급자		비고
				업체명	대표자	
○○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1지구)	침사지 1식	2,364,894	'16. 2.15.~'17. 2.14. ('16. 2.14.)	○○산업개발	○○○	
○○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2지구)	침사지 1식 외 3개소	2,923,792	'16. 6.15.~'17. 6.14. ('16. 6.14.)	○○건설 합자회사	○○○	
○○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3지구)	휴탕물저감시설 14개소	1,128,938	'16. 6.15.~'17. 6.14. ('16. 6.14.)	○○종합건설 주식회사	○○○	
○○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4지구)	휴탕물저감시설 7개소	1,792,220	'16. 6.15.~'17. 6.14. ('16. 6.14.)	○○건설 주식회사	○○○	
○○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5지구)	휴탕물저감시설 26개소	1,865,569	'16. 6.15.~'17. 6.14. ('16. 6.14.)	○○토건 주식회사	○○○	

【일련번호: 7】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양구군 ○○○○○○실

【시행년도】 2015년 ~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4,620천원

【제목】 ○○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공사 사업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양구군(○○○○○○실)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휴식 공간과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해안면 현리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가. 건축공사 시공·안전관리 업무 소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및 건설안전 기본지침의 규정에 따르면 시공자가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m 이상 1.8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벽이음은 수직·수평방향으로 5m 이내 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시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철물(양카식, 매립식)을 사용하여 비계의

전도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미끄러짐과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부에는 두께 12mm, 넓이 200×200mm 이상의 깔판 및 밀둥잡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는 등 단단히 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이에 적합한 기준의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실)에서는 2016. 10. 24.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결과 비계기둥의 시공 간격은 2m를 초과하여 시공되어 있는 부분이 다수 있었고 벽 이음은 1개소에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비계기둥 하부의 깔판 및 밀둥잡이의 설치 수량이 현저히 적고, 작업발판도 밀실 고정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는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2016. 10. 28.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나. 일상감사 업무 미이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양구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거쳐야 하며,

일상감사 대상사업은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2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요청하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 등 감사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종합감사시 일상감사 업무처리 소홀로 인한 현지 처분 요구사항으로 일상감사 담당부서인 양구군(○○○○실)에서 문서로 관련 실과에

통보하여 향후 해당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업추진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적한 바 있으며, 2016년에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 중요성 및 행정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양구군(전부서)에 관련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일상감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실)에서는 아래 [표1] 과 같이 일상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일상감사 미이행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사 업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일상감사	공사 해안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공사 (건축)	2015.12.28 ~2016.12.31	656,624	

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 원가계산 산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의 규정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측량용역·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고,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원가계산을 할 경우에는 제4절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일반관리비(6%)와 이윤(10%) 등의 제경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양구군(○○○○○○○실)에서는 ○○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한 건축사가 제출한 공사원가 계산서에 대한 확인 및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아래 [표 2] 와 같이 제경비에 대한 요

율이 규정과 다르게 과다 계상되었는데도 준공 및 대가지급시 이에 대한 설계변경 및 정산절차를 이행 하지 않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사업에 대한 제경비가 과다 산출되는 등 총 362천 원의 사업비가 낭비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폐기물 처리용역 현황

(단위: 천 원)

사 업 명	사업량(톤)	준공금액 (a)	적정금액 (b)	과다지출 (원) (a-b)	비 고
○○면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95.1	21,430	21,068	362	예산낭비

※ 폐기물 처리용역은 이윤 10%를 적용하여야 하나 15%를 적용

라. 미설치 가설시설물 미정산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금번 감사시 현장확인 결과 아래 [표 3] 과 같이 공사가 완료된 가설 시설물 설치 공사 중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의 전체 공정에 대한 공사가 미시공되었는데도 2016. 10. 28.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 별도의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 3] 정산하여야할 미설치 가설시설물 현황

(단위: m²/ 천 원)

공종명	규 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가설공사 (비계다리)	3개월	62	4,620	0	0	가설공사 완료시점 에서 미시공

【처 분 요 구】

- 앞으로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사업초기 단계부터 사업의 적합·타당성을 검증하는 일상감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시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또한, 용역·공사 내역의 철저한 검토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고,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양구군 ○○○○과

【시행년도】 2015년 ~ 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읍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업무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양구군(○○○○과)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체육대회의 개최확대와 전지훈련팀 유치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읍 △리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가. 건축공사 품질관리 업무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2항에 따르면, 연면적 660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장비 및 품질시험실(20m²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에 대해서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에 따라 시험실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구군(○○○○과)에서는 “○○읍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착공계획서에 계약상대자인 ○○종합건설(대표 ○○○)이 품질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품질시험 내용이나 이에 대한 별도 검토 및 승인을 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에게 적정여부 통보 등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공사업체는 품질시험 장비·대상·규모 등에 대하여 공사 감독이나 감리자의 확인도 없이 부적정하게 품질시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일상감사 미이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양구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거쳐야 하며,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용역 5천만 원 이상) 등 인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요청하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 등 감사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양구군에 대한 강원도종합감사에서 일상감사 업무 처리 소홀로 인한 현지 처분요구사항으로 지적되었고, 일상감사 담당부서인 양구군(○○○○실)에서 문서로 관련 실과에 통보하여 향후 해당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업추진 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적한 바 있으며, 2016년에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 중요성 및 행정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양구군(전실과)에 관련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

다.

그런데 양구군(○○○○과)에서는 아래 [표 1] 과 같이 ○○읍 실내배드민턴 건립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일상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1] 일상감사 미이행 현황

(단위: 천 원)

연 번	구 분	사 업 명	계약기간	설계금액
1	용 역	○○읍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설계용역 (건축·기계)	2015.10.16 ~2016.5.3	108,337
2	공 사	○○읍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 (건축·기계)	2016.5.30 ~2017.1.5	2,495,132
3	”	○○읍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전기)	2016.6.23 ~2017.1.28	128,635
4	”	○○읍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소방)	2016.6.23 ~2017.1.28	226,753

다. 공용건축물의 협의 및 착공신고 지연 처리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1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협의하게 되어 있어 건축협의 후 적법한 검토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자는 협의 후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건축협의 후 공사 착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양구군(○○○○과)에서는 아래 [표 2] 와 같이 공사 착공후 49일이 지난 시점에서 공용건축물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52일이 경과하여 건축

물 착공계획을 신고하는 등 업무를 지연 처리하였다.

[표 2] 공공건축물 협의 및 착공신고 지연처리

(단위: m²)

위 치	연 면 적 (건축면적)	협 의 내 역				착공일	건축협의일 (지연일)	착공신고 (지연일)
		구 조	용 도	건축면적	연면적			
양구군 △△읍 △리 434-6번지	2,447 (1016.27)	철골조	운동시설	2,447	2998	'16. 5.30	'16.7.18 (49일)	'16.7.21 (52일)

【처 분 요 구】

- 앞으로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사업초기 단계부터 사업의 적합·타당성을 검증하는 일상감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시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또한,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준수하는 등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부 서 명】 양구군 ○○○○과, △△△△과

【시 행 년 도】 2015년 ~ 2016년

【행 정 상 조 치】 주의

【재 정 상 조 치】 -

【제 목】 ○○○ 야생화분재 생태원 조성사업 사업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양구군(△△△△과)에서는 휴전선 인근 남한 최북단에 서식하는 희귀 자생식물의 보전과 체계적인 증식 및 탐방객 방문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야생화분재 생태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전기, 통신분야 설계업 미등록 업체와 용역계약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12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으며 등록된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한 해당기술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설비·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않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등 경미한 공사와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용역 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구군(△△△△과)에서 작성한 아래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위배됨이 없이 설계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양구군(○○○○과)에서는 공사내용 및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전기·통신 분야의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발주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만 했다.

그런데 양구군(○○○○과)은 아래 [표 1] 과 같이 “○○○야생화분재 생태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전기, 통신분야는 조경기술사 및 건축사가 설계할 수 없는데도, 전력시설물 및 소방시설설계 자격이 없는 ○○건설시스템(주)(대표 ○○○) 등 2개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전기분야 등 설계업 미등록 업체와 용역계약 내역

용역명	계약금액(천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발주 시 필요한 설계업등록분야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등록분야	
○○○야생화분재 생태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3,000	'14. 4.30. ~ '14.11.17.	입찰	○○군	○○건설시스템(주)	○○○	조경	전기, 통신분야
				○○시	건축사무소 ○○	○○○	건축	

나. 전기 공사감리용역 미발주 및 감리원 미배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2조의2,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 총공사비가 5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작하기 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만 하고, 배치된 감리원에 대하여는 그 배치현황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총공사비 5천만 원 이상인 전기공사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구군(△△△△과)에서는 아래 [표 2] 와 같이 “○○○야생화분재 생태원 조성사업 전기공사”를 시행하면서 전기 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감리업무가 발주되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공사기간 동안 전기 분야 전문 감리원의 배치 및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2] 미발주·계약 감리용역 및 감리원 미배치 현황

(단위: 천 원)

공사명	공사계약금액	공사기간	위반사항	현황		
				법적여부	발주/계약	실태
○○○야생화분재 생태원 조성사업(전기)	63,748	'15. 6. 3. ~ '16. 8.29.	법적감리대상임에도 감리원 미배치	감리대상	미발주/미계약	공사감리없이 공사진행 완료

다. 건축감리 용역비 설계변경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감독자는 해당 용역의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그 용역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양구군(△△△△과)에서는 2015. 2. 4. ○○종합건설(주)과 건축·조경 관련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18.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와 10,690천 원에 건축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6. 8. 31. 준공예정일로 “○○○ 야생화분재 생태원 조성사업 감리용역(건축)”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양구군에서는 건축감리를 시행할 시점에 공사계약 완료 및 건축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계약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감리용역비용을 산출해야만 했다.

그런데 양구군(△△△△과)에서는 당초 설계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정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건축 감리비 총 1,037천원(제경비 포함)을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과다 지출하였다.

[표 3] 건축감리 계약 설계변경 미이행 현황

(단위: 천 원)

용역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용역비			계약상대자		
			당초	변경	미정산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야생화분재 생태원 조성사업 감리용역 (건축)	10,690	2015.5.18 ~2016.8.31	10,690	9,653	1,037	강원 ○○시	㈜종합 건축사 사무소○	○○○

※ 사유 : 본 공사가 계약되어 건축부분의 공사계약현황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산정하여 예산 과다 지출

[처분요구]

- 공공 사업추진 시 해당 용역사의 자격·면허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격 없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감리대상 공사가 감리원 배치 없이 완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더불어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